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가단100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김대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육근형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1. 8. A과, A이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운전자금 50,000,000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50,000,000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22. 11.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D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A은 2020. 1. 9. 분할상환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D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20. 3. 31. D은행에 합계 48,576,048원(원금 48,300,000원, 이자 276,0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의 재산처분 등

- 1)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남편인 F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각 대표자이다.
- 2) A은 2019. 12. 23. 위 두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37,695,92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3)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4.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0167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H이 2019. 6. 19. 설정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자: E)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은 인천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27,5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집행법원은 2021. 4. 13.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7,296,01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집행공탁 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A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 2020하단20069호로 파선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이후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관재인의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실질을 같이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미 원고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9. 12. 23.로부터 불과 2주 남짓 지난 2020. 1. 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해 원고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2020. 3. 31. 원고보조참가인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구상금채권은 부인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부인대상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9. 12. 23. 무렵 피고에 대한 채무와 D은행에 대한 48,300,000원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외에도 D은행에 대한 103,893,364원의 대출금채무(대출일: 2016. 4. 20.)와 J에 대한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었던 사실, 당시 A에게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본래 A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G 또는 E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위 회사들의 물품대금채무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A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년경부터 E 및 G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두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었고, 특히 위 두 회사가 그 물품대금채무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액면금 합계 283,000,000원의 수표가 부도 처리된 상황이었다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본래 위 두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임에도 A이 개인의 지위에서 새삼스럽게 채무를 부담하면서 A의 개인 재산에 채권최고액 337,695,92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소되었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이 사건 가처분을 원인으로 공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부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공탁자인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

별지1

인천지방법원 I, K(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0167호 가처분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제5319호로 공탁된 57,296,016원의 배당금. 끝.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서구 대 125.2㎡2.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위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2층건주택 건평 15평5작

외2층평 10평5홉

지하실 2평6홉5작

세멘부럭조 스라브즙평가건창고

건평 2평1홉2작

- 끝 -

